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02월 01일

효문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화	최 *화 1970-10-04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02-01
이 *락	이 *락 1993-10-25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1길 (명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02-01